

2023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 수정안

의안 번호	79
----------	----

제출년월일 : 2022.12.02.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불가피하게 2023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수립하여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조성규모는 11,33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30백만원이 증가하였고, 2023년도 평창군 기금조성 규모는 총 7개 기금 24,63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75백만원이 감소하였음.

나. 기금별 규모는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기금명	2022년도말 조성액 [㉠]	2023년 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 + [㉢] - [㉣])	증감 [㉤] ([㉡] - [㉠])
		수입 [㉢]	지출 [㉣]		
합계	25,808,891	4,673,176	5,847,831	24,634,236	△1,174,655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4,630,423	29,267	2,306,405	2,353,285	△2,277,138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1,000,000	330,007	0	11,330,007	330,007
평창군체육 진흥기금	2,937,432	1,040,598	1,100,000	2,878,030	△59,402
평창군자활기금	251,470	251,535	30,000	473,005	221,535
평창군재난 관리기금	971,875	813,053	800,000	984,928	13,053
평창군옥외 광고발전기금	153,965	25,051	0	179,016	25,051
평창군식품 진흥기금	129,723	32,649	34,422	127,950	△1,773
평창군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5,734,003	2,151,016	1,577,004	6,308,015	574,012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상환은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 융자금은 지출 ㉣에 포함하여 계상함.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59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